|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촉진 규획(2011~2015) 승인**  **하달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  國發 [2012] 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와 위원회, 각 직속기구:  국무원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 및 정보화부,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에서 제정한 《취업촉진 규획(2011~2015년)》을 승인 하달하므로 이에 따라 열심히 집행하기 바란다.  국무원  2012년 1월 24일    **취업촉진 규획(2011~2015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공업 및 정보화부, 재정부, 농업부,  상무부  "12.5" 기간의 취업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여 경제발전과 취업확대의 조화, 사회조화와 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2.5 규획 요강》과 《중화인민공화국 취업촉진법》에 의거 이 규획을 제정한다.  **1. 배경**  (1) "11.5" 기간 취업업무의 주요성과  "11.5" 기간은 우리나라 발전사상에서 지극히 평범하지 않은 5년이자 취업업무가 도전에 직면하고 성과도 뚜렷한 5년이다. 중공 중앙, 국무원의 지도하에서 취업확대의 발전전략과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지진재해와 국제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있음으로 인해 취업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취업구조가 부단히 개선되고 노동자의 취업능력도 한층 더 제고되었다. 인력자원 배치에서의 시장기제의 기본역할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고 체제전환 과정에서 내려온 정리해고 실업자의 재취업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였으며, 도농통합을 추진하고 농업 유휴노동력의 질서화한 이전 취업을 유도하고 대학교 졸업생들의 기층취업과 자주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면에서 새로운 진전을 가져왔다. 도농을 아우르는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체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전체 노동자를 상대하는 직업교육 제도와 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가 한층 더 완비해 졌다. 취업촉진법,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 연이어 반포 시행되고 취업촉진 법률체계와 노동관계 조율기제가 점차 건전히 되었으며 기업의 임금분배 제도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  |  |  |  | | --- | --- | --- | --- | | **표 1: "11.5" 기간 취업업무**  **진전 상황** | | | | | **지표/항목** | **2005년** | **"11.5" 규획 목표** | **2010년 실현 상황** | | 5년간 도시 신증취업(만명) | [4200] | [4500] | [5771] | | 도시 등록 실업률(%) | 4.2 | 5 | 4.1 | | 5년간 이전 농업노동력(만명) | [4000] | [4500] | [4500] | | 전국 도농 취업인원(억명) | 7.46 | / | 7.61 | | 1, 2, 3차 산업 종업인원 비중 | 44.8:23.8:31.4 | / | 36.7:28.7:34.6 | | 전국 농민공 총량(억명) | / | / | 2.42 | | 전문기술인재 총량(만명) | 4196 | / | 4686① | | 비고: []는 5년간의 누계 수, ①은 2008년 말의 데이터. | | | |   (2) "12.5" 기간에 직면한 취업형세  "12.5" 기간에 우리나라의 취업형세는 더욱 복잡하고 취업총량의 압력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노동자의 기능과 일자리 요구가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노동력 공급이 기업의 요구에 매치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더욱 두드러질 것인바 취업임무가 더욱 무거워질 것이다. 첫째, 노동력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총량압력이 계속 확대될 것이다. 도시 취업대기 노동력이 연 평균 2,500만명에 달하며, 이 밖에 상당 수량의 농업 유휴 노동력의 이전 취업이 필요하다. 둘째, 취업의 구조적 모순이 더욱 격화될 것이다. 기술진보가 가속화되고 산업의 최적화와 업그레이드가 추진되면서 기능인재 부족 문제가 더욱 돌출해 질 것이다. 일부지역은 기업의 노동력 수요와 공급에 구조적 실조가 발생하여 기업의 "인력난"과 노동자의 "취업난" 문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대학교 졸업생을 중점으로 하는 청년들의 취업, 농업 유휴노동력의 이전 취업, 실업자의 재취업, 그리고 취업 곤란층의 취업 실현이 어려운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제사회의 환경변화가 취업촉진에 새로운 도전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과학기술진보, 관리혁신 추진은 노동자의 소질 제고에 더욱 높은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며, 도시화 추진도 농업 유휴노동력의 이전 취업에 새로운 임무를 제기하였다.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그리고 직업교육이 수요를 만족시키기 못하고 있으며, 인력자원시장 정보화 건설이 정체되어 노동력 유동취업에 영향을 주는 체제적 기제장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경제사회 전환 과정에서의 노동관계 모순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노동자이익 보장 요구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노동관계 조정 체제기제가 완벽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비교적 돌출하여 노동관계 조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취업업무에서 직면한 복잡한 형세를 깊이 인식하고 임무와 방향을 한층 더 명확히 하여 전력을 다해 취업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2. 지도사상과 기본원칙, 발전목표**  (1) 지도사항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한다. 등소평 이론과 "3개 대표" 중요사항의 지도하에 과학발전관을 심도 있게 관철하여 경제발전 전환방식의 요구에 부응한다. 민생 보장과 개선, 조화사회의 건설 요구에 긴밀히 결부시켜 취업을 민생의 기본과 경제사회발전의 우선적 목표로 삼아 인력자원을 충분하게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노동자의 자율적 취업과 시장조정 취업, 정부의 취업촉진을 결부시키는 기제를 건전히 한다.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여 평등한 취업기회를 마련하며,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여 취업의 질을 제고시키고 충분한 취업을 실현한다.  (2) 기본원칙  ① 취업촉진과 경제사회발전의 상호 결부를 추진한다. 취업촉진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적 위치에 놓아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최고의 대사로 삼는다. 경제발전에 의거하여 취업성장을 이끌며 취업확대로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한다.  ② 취업촉진과 인력자원의 개발을 상호 결부시킨다.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가속화에 부응하여 주로 과학기술, 노동자의 소질제고, 관리혁신 전환에 의한 발전을 추진하며, 인력자원 개발을 강화하여 직업교육과 창업교육을 힘껏 추진하며, 노동자의 직업소질과 취업능력을 전면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취업을 확대하고 취업 질을 높인다.  ③ 시장기제의 작용을 발휘시키고 정부의 취업촉진과 서로 결부시킨다. 시장기제가 인력자원 배치 중에서의 기본적 역할을 충분히 발취시켜 제도적, 체제적 장벽을 제거하고 정부의 취업촉진 중에서의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한다. 취업촉진을 경제사회의 정책 제정, 실시, 조정의 기본목표로 삼고 사회 각계의 역량을 광범위하게 동원한다. 특히 공회, 공청단, 부녀연합회, 장애자연합회 등 사회단체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취업 확대와 안정에서의 적극성을 충분히 동원하여 취업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④ 기업발전 촉진과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서로 결부시킨다. 노동자의 이익보장 요구를 중요시하고 기업과 종업원 이익의 공유기제 형성을 탐색하며, 노동자의 취업권리 보장과 노동자의 노동보수, 휴식휴가 등 권리 보장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처리하여 조화롭고 안정적인 노동관계 구축을 통해 취업규모 확대를 실현하고 취업의 질을 제고시킨다.  (3) 발전목표  ① 취업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취업구조를 더욱 합리하게 한다. 4,500만 명의 도시 신증 취업을 실현하며, 4,000만 명의 농업 노동력 이전을 실현한다. 도시 취업비중을 점차 제고시키며 3차 산업의 취업구조를 더욱 최적화한다.  ② 실업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여 취업국면의 안정을 유지한다. 도시 등록실업률을 5% 이내로 통제한다. 실업자를 조직하여 취업준비 활동에 참여시킴으로써 평균 실업주기를 진일보 단축한다. 취업이 어려운 자와 미취업 가정인원에 대한 장기적인 취업지원을 보장한다.  ③ 인력자원 개발수준을 현저하게 제고시킨다. 노동자에게 효과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전국 기능노동자 총량을 1.25억 명에 도달시킨다. 그중 고기술인재 총량을 3,400만 명에 도달시켜 기능노동자의 비중을 27%로 끌어 올리며, 전문기술인재 총량을 6,800만 명에 도달시킨다.  ④ 취업 질을 진일보 제고시킨다. 기업 노동계약 체결비율을 90%에 도달시키고 기업 집단계약 체결비율을 80%에 도달시킨다. 정상적인 임금인상 기제를 형성하여 종업원 임금소득수준이 합리적이고 보다 빠르게 증장하도록 한다. 최저임금기준을 연간 13% 이상 인상하여 절대다수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이 당지 도시 종업인원 평균임금의 40% 이상에 달하게 한다. 노동조건을 보다 크게 개선한다. 사회보장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아우르게 하여 취업안정성을 현저하게 제고시킨다.   |  |  |  | | --- | --- | --- | | **표 2: "12.5" 기간 취업 주요지표** | | | | **지표** | **2010년** | **2015년** | | 도시 신증 취업인수(만명) | [5771] | [4500] | | 도시 등록실업률(%) | 4.1 | ＜5 | | 농업 노동력 이전(만명) | [4500] | [4000] | | 고기능 인재 총량(만명) | 2863 | 3400 | | 전문기술인재 총량(만명) | 4685① | 6800 | | 기업 노동계약 체결비율(%) | 65 | 90 | | 기업 집단계약 체결비율(%) | 50 | 80 | | 최저임금기준 연 평균 증장율(%) | 12.5 | ＞13 | | 노동인사분쟁 중재 재결비율(%) | 80 | 90 | | 비고: "12.5" 기간 주요지표는 예측성 지료, []는 5년간 누계 수, ①은 2008년말 데이터 | | |   ⑤ 통합, 규율되고 탄력성이 있는 인력자원 시장을 기본적으로 형성한다. 인력자원 시장관리 제도를 점차적으로 통합시킨다. 도농을 아우르는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체계를 한층 더 건전히 하고 모든 가두(街道)와 향진, 도시의 95% 이상의 주민생활구역에 기층 노동취업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정보 네트워크건설을 다그쳐 추진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의 인터넷 연결을 실현한다.  ⑥ 노동자 권익보장기제를 더욱 완벽히 한다. 기층 노동관계 조율업무 체계를 한층 더 보강한다. 전국 향진(가두)에서 노동보장 감찰 "구조화, 네트워크화" 관리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 기업, 가두, 향진의 기층 조정조직과 노동인사 분쟁중재기구의 실체화 건설을 기본적으로 완성하여 중재안건의 재결비율을 90%로 끌어올린다.  **3. 주요임무와 정책조치**  (1) 경제발전의 취업 촉진능력을 제고한다.  ① 취업 우선전략을 관철한다. 각급 정부는 국민경제 규획을 제정하거나 산업구조와 산업분포에 대해 중대한 조정을 실시할 때 취업을 사회경제발전의 우선적 목표로 고려하여 경제발전, 산업구조 조정 및 취업확대가 양성 작용하는 장기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더욱 충분한 취업목표를 실현하는 요구에 따라 경제발전 성장률을 합리적으로 책정한다. 재정, 금융, 산업 등 거시 경제정책을 제정할 때 취업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 실업리스크를 방비하는 데 유의한다. 취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끊임없이 보강하여 공공재정의 보장과 사회 각계의 다차원의 투입 기제를 형성한다. 정부의 투자와 중대 건설프로젝트의 취업 촉진작용을 발휘시키고 공공투자로 취업을 촉진시키는 검정평가기제 구축을 연구한다.  ② 취업능력이 강한 산업과 기업을 힘써 발전시킨다.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취업분야를 끊임없이 개발하여 지력 집약형 취업기회를 늘인다. 경제전환과 구조조정에서 노동력의 비교우위 발휘에 유리한 기술진보와 산업 업그레이드 전략을 다그쳐 실현한다. 제3차 산업을 힘써 발전시키고 서비스업의 취업루트를 개발한다. 금융, 물류 등의 생산성 서비스업과 요식 등의 생활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정책의 지원강도를 보강하며 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을 힘써 제고시킨다. 산업 업그레이드를 온당하게 실현한다. 자본집약, 하이테크제조업을 발전시킬 때 노동 집약형 기업, 특히 고부가가치의 노동집약형 기업의 발전을 함께 고려한다. 중소기업을 힘써 발전시킨다. 소형 및 미형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제2차 산업의 취업비중을 안정적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늘인다. 현대농업, 정밀농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제1차 산업의 취업 잠재력을 발굴하여 농업의 산업화 경영을 추진하고 농촌의 취업기회를 부단히 늘인다.  ③ 창업에 의한 취업을 촉진시킨다. 노동자의 창업을 장려하는 조세혜택, 소액 담보대출, 재정보조, 자금보조, 사업장안배 등의 지원정책을 완벽히 하고 관철하여 심사비준 수속을 간소화하며, 요금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창업환경을 개선한다. 창업교육체계를 건전히 하여 대학교와 중등 직업학교에서 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창업서비스체계를 건전히 하여 창업자에게 프로젝트정보, 정책자문, 개업지도, 융자서비스, 인력자원서비스, 추적 지원을 제공하며, 여건을 갖춘 지역에서 일부의 시범적인 창업부화 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장려한다. 혁신적인 도시건설을 추진한다. 선전과 언론유도를 보강하고 창업의식을 발양시켜 중점 창업전형을 수립하여 창업을 숭배하고 성공을 포상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대하는 양호한 창업분위기를 조성한다.  ④ 가사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취업을 촉진시킨다. 가사서비스, 양로서비스, 주민생활구역 보살핌 서비스, 환자간호서비스, 장애자 기탁서비스 등의 가사서비스업태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현지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기타 가사서비스 업태를 발전시킴으로써 가정의 기본요구를 만족시킨다. 재정과 조세, 금융, 토지, 가격 등 면에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설립, 융자, 브랜드 건설 등 면에서 가사서비스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가사서비스의 공익성 정보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추진하고 종업인원에 대한 전문 기능교육을 강화한다. 가사서비스 "천호 백강(千戶百强)" 건설 활동을 폭 넓게 벌려 영향력이 있는 가사서비스 유명브랜드를 수립한다. 상응하는 노동자 채용 정책과 근로기준을 다그쳐 제정하여 가사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종업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2) 더욱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한다.  ① 취업촉진에 더욱 유리한 재정적 보장정책을 실행한다. 공공재정을 국가 산업정책의 지향에 부합되는 소형 및 미형 기업과 노동집약형 산업에 치중시키고 재정지출을 점차적으로 민생에 돌림으로써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 각급 정부는 취업자금 투입을 증가하고 자금사용 관리방법을 한층 더 완벽히 하고 취업자금 지출에 대한 실적 평가를 강화하여 자금사용 효과와 관리수준을 제고시킨다. 중앙재정은 계속 취업 특별자금 이전지불을 강화한다.  ② 취업 촉진 및 지원 조세우대 정책을 실행한다.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에 유리하고 서비스업과 소형 및 미형 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조세정책 체계를 구축 및 건전히 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며 도농 노동력의 취업확대 중에서의 조세정책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대학교 졸업생, 농민공, 취업 곤란자 등 중점 대상자의 취업에 대한 조세정책을 완벽히 하고 철저하게 관철하며, 기업이 이들 중점 대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③ 취업촉진에 더욱 유리한 금융지원 정책을 실행한다. 통화정책의 거시적 조정역할을 적극 발휘시키고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지원하여 실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양호한 거시적 금융환경을 마련한다. 거시적 신용대출 정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금융기구들에서 국가 산업정책의 지향에 부합되는 노동 집약형 산업, 서비스업, 소형 및 미형 기업의 발전과 자주적 창업을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인도하며, 소형 및 미형 기업의 대출을 촉진하는 재세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소액 담보대출 정책을 한층 더 완벽히 하고 정책 모니터링 평가기제를 구축하여 정책의 시행효과를 확실하게 제고시킨다.  ④ 취업촉진에 더욱 유리한 대외무역정책을 실시한다. 수출입 정책을 제정하고 무역 분쟁을 처리할 때 국내 취업에 대한 영향을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취업확대에 유리한 업종과 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무역마찰 영향이 비교적 심각한 업종과 기업에 대해 시의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해 실업률을 줄인다. 대외 노무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한다.  ⑤ 노동자의 다종 루트, 다종 형식의 취업을 장려하는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우대정책과 취업서비스를 통해 노동자가 스스로 직업을 찾거나 취업하는 것을 지원한다. 노동자의 소형 및 미형기업 취업, 임시성격의 취업 및 기타 형식의 탄력적 취업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이에 어울리는 노동관계, 임금지급 제도를 완벽히 하여 취업과 사회보장 연동 기제를 완벽히 함으로써 노동자의 탄력적 취업, 유동취업 또는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취업의 안정성을 높인다.  (3) 도농, 중점 대상자의 취업업무를 통합 처리한다.  ① 도농과 구역의 취업 통합조율 발전을 추진한다. 도농 통합을 추진하여 도농 노동자의 평등 취업 제도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노동자 취업의 도농차별과 취업 차별시를 제거하여 공정한 취업환경을 마련한다. 분류별 지도를 강화한다. 동부지역의 산업업그레이드와 경제구조 조정을 추진하여 취업 질을 제고시킨다. 산업에 결부한 중서비지역의 다차원의 전이를 지도하여 더욱 많은 노동력이 현지 또는 부근에서 취업하도록 인도한다. 소수민족지역과 빈곤지역의 취업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정책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발전과 취업 확대를 지원한다.  ② 대학교 졸업생과 기타 청년들의 취업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한다.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취업업무의 첫 순위에 놓아 대학교 졸업생의 취업영역을 적극 확대하며, 중소기업에서 대학교 졸업생을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대학교 졸업생들이 도농기층, 중서부지역, 소수민족지역, 빈곤지역, 그리고 간고하고 편벽한 곳에서 취업하도록 인도하며, 제반 지원정책을 관철한다. 대학교 졸업생들의 자율적 창업을 장려한다. 대학교 졸업생들이 취업 견학과 직업 교육에 참가하는 것을 지원하며, 과학연구 프로젝트단위에서 대학교 졸업생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한다. 무료 사범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업무를 계속해서 차질 없이 처리한다. 대학교 졸업생들의 의무 군역복무 업무를 적극 추진한다. 취업지도, 취업서비스를 힘써 강화하고 대학교 여성 졸업생의 취업문제에 더욱 큰 관심을 돌리며, 취업이 어려운 대학교 졸업생과 기타 장기 실업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보강한다. 청년과 각종 졸업생들의 구직 취업에 어울리는 인터넷 취업서비스를 힘써 발전시키며, 실명제를 바탕으로 하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통계제도를 완벽히 한다. 대학교 인재 양성모델을 한층 더 개혁하여 그로서 경제 사회발전의 수요에 더욱 부응하도록 함으로써 인재 양성 질을 제고시킨다. 퇴역 군인의 취업업무를 계속해서 잘 처리한다.   |  | | --- | | **표 3: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촉진계획** | | 01 일자리 확대계획. 취업루트를 확대시켜 대학교 졸업생들이 중소기업, 비공유제 기업 및 도농 기층에서 취업하도록 인도한다.  02 취업서비스 및 지원계획. 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서비스와 취업지도를 강화하며,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견학, 직업교육, 그리고 경제부담이 큰 대학교 졸업생에 대한 취업지원을 잘 처리한다.  03 창업 인도계획. 대학교 졸업생들에 대한 창업교육과 양성을 강화하고 창업서비스를 보강한다. 창업 지원정책을 완벽히 하여 대학교 졸업생들의 자율적 창업을 촉진시키고 지원한다.  04 기층 취업프로젝트. "대학교 졸업생들의 농촌 임직", "3支 1扶(교육 지원, 농촌 지원, 의료 지원 및 빈곤 구조), "대학생의 자율적 서비스 서부계획", "농촌 의무교육단계 학교교사 특설 직위계획" 등의 기층 취업프로젝트를 계획 있게 추진한다. |   ③ 농업 유휴 노동력의 이전 취업을 촉진시킨다. 도시화 가속발전 추세에 맞추어 소도시의 건설을 다그치고 현역(縣域) 경제를 발전시키고 향진 기업과 비농업산업을 발전시켜 농업 유휴 노동력을 위해 더욱 많은 생산과 취업 일자리를 창출하여 현지 또는 부근에서 취업하도록 한다. 창업 정책조치를 완벽히 하고 관철하며 농민공의 귀향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유동 취업에 대한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여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취업서비스, 노동권리 보장 "3위 1체"의 업무기제를 한층 더 완벽히 함으로써 농업 유휴 노동력의 도시 취업과 안정적인 이전을 촉진시킨다. 각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편 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일정한 연한에 달한 농민공과 그 가족의 도시호적 이전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추진한다.  ④ 낙후 생산능력 도태 기업의 종업원 정착업무를 차질 없이 한다. 낙후 생산능력 도태 기업의 종업원 정착 업무를 본 지역의 에너지 배출절감, 낙후 생산능력 도태 업무의 전반적 규획에 포함시켜 기업의 퇴출과 종업원의 권익보장을 전면적으로 고려하며, 낙후 생산능력 도태 기업의 종업원 정착업무 조율기제를 건전히 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여러 가지 도경과 루트를 통해 종업원을 정착시킨다. 지원과 자금 투입 정책을 개선하여 종업원의 노동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종업원의 사회보험 관계 연결 및 이전을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처리한다. 기업을 협조하여 종업원의 직장과 직업 변경 교육을 전개하며, 취업을 안정시키고 실업을 줄인다.  ⑤ 취업 곤란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취업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취업 지원정책을 완벽히 한다. 공익성 일자리를 창출하여 장기적인 업무기제를 형성한다. 충분한 취업을 실현한 주민생활구역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일부 지역들에서 솔선 충분한 취업을 실현하는데 기반을 다진다. 《장애자 취업조례》를 전면적으로 관철 집행하고 장애자 취업촉진과 보호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완벽히 한다. 당정기관, 기업과 사업단위에서 비율에 따라 장애자를 채용하도록 한다. 복리기업, 맹인의 마사지기구 등 장애자의 집중 사용단위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보강하여 장애자의 스스로 창업과 탄력적 취업을 도와주며, 장애자들이 주민생활구역의 서비스업, 도시민 편의 서비스망에서 취업하는 것을 추진한다. 장애자연합회조직과 공동으로 취업지원을 전개하는 업무기제를 구축하며, 각급 정부에서 개발한 공익성 일자리는 우선적으로 장애자를 배치한다. 부녀들의 취업업무를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4) 인력자원 개발을 힘써 추진한다.  ① 전문 기술인재 대오의 건설을 보강한다. 신세기 천백만 인재공정을 가일층 실시 및 완벽히 하고 정부의 특수수당 제도를 완벽히 하며 박사후 제도를 개혁하고 완벽히 한다. 더욱 개방적인 인재정책을 실시하여 해외 유학인재의 귀국 근무, 창업 또는 다종형식의 귀국 봉사를 힘써 추진한다.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 유학인재의 귀국 창업 지원계획 및 해외교포의 귀국 봉사 행동계획을 적극 실시하여 유학인원의 창업단지 건설을 계속해서 보강한다. 10,000명 전문가의 기층 방문서비스 행동계획을 실시한다. 전문기술인원 직명제도와 직업자격제도 개혁을 전면적으로 계획하여 전문 기술인재 평가기제를 완벽히 하며, 전문 기술인재 직업허가 제도를 규율하고 전문 기술인재 직업수준 평가방법과 전문 기술직무 평가방법을 완벽히 한다. 전문 기술인재 지식의 업데이트 공정을 심도 있게 실시하고 전체 전문기술인원을 상대하는 평생 교육제도를 건전히 한다.  ② 도농 전체 노동자를 상대하는 직업교육 제도를 건전히 한다. 시장의 수요와 취업 욕구를 충분하고 긴밀히 결부시켜 직업교육을 보강한다. 취업 기능교육, 직장 기능제고 교육 및 창업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실정에 맞는 학도제 교육을 적극 탐색하고 노동자의 종신 직업교육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며, 도농 노동자들이 모두 맞춤형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 기능수준을 제고시킨다. 교육관리를 보강하고 교육자원을 정합하여 전사회적 직업교육 네트워킹을 건전히 한다. 일부의 보다 높은 교육 질을 갖추고 취업과 긴밀히 결부되고 당지에서 시범인도 작용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구에 의탁하여 직업기능 훈련 기지를 건설한다. 장애자 직업교육 훈련을 보강하며, 교육 보조정책을 실시한다.  ③ 산업발전에 시급히 필요한 기능인재 양성을 다그친다. 기업을 주체로 하고 직업학교를 기반으로 하며, 학교교육과 기업의 양성을 긴밀히 연결시키고 정부 추진과 사회지원을 서로 결부시키는 고기능인재의 교육 양성체계를 진일보 건전히 한다. 국가 고기능인재 진흥계획을 실시한다. 대형 골간기업, 중점 직업학교 및 교육기구, 그리고 고기능 리더인재에 의탁하여 중점 업종(분야)에서 급히 수요한 직업(직종) 고기능인재 양성을 다그쳐 추진한다. 직업자격증서 제도를 완벽히 하며 직업능력을 제고시키고 업무실적을 중점으로 하고 직업윤리와 직업 지식수준을 중요시 하는 기능인재 평가체계를 다그쳐 건설하여 기능인재에 대한 다차원의 평가기제를 탐색함으로써 기능인재의 성장통로가 막힘없이 잘 통하도록 한다.   |  | | --- | | 표 4: 인력자원 개발 중점공정 | | 01 전문기술인재 지식 업데이트공정. 대학교와 과학원, 연구소 및 대형 기업의 기존 교육기구에 의탁하여 국가의 평생교육 기지를 중점적으로 건설하고 대규모의 지식 업데이트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기술인재의 수준과 능력을 제고시킨다.  02 국가 고기능인재 진흥계획  (1) 고급 기술사 교육. 업계, 기업 및 직업학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비교적 깊은 전문이론지식과 정밀한 기예기능을 구비한 기술사 및 고급 기술사들을 다그쳐 양성한다.  (2) 기능 거장 작업실 건설. 중심지역과 중점 업계를 아우르는 기능 전달 및 확산 네트워크를 기본상 형성하여 비교적 완벽한 기능인재 기예의 가치실현과 세대 승계기제를 구축한다.  (3) 취업, 창업, 기능 훈련업무를 보강한다. 산업 집중도가 높은 지역 중심도시와 지방(시)급 이상 도시에 중점 훈련 기지를 건설하여 사회 각종 인원을 상대하는 공익성, 시범성 기능훈련과 감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실제 조작능력 기능요소 훈련, 특히 직업공급이 부족한 고기능인재 양성에 더욱 중시를 돌림과 아울러 전문화 창업교육을 전개한다. |   (5) 인력자원 시장건설을 보강한다.  ① 통합, 규율, 융통성이 있는 인력자원 시장을 다그쳐 구축한다. 인력자원 배치분야의 개혁을 다그쳐 추진하여 인력자원 시장의 도농분리, 지역분리 및 신분분리 상태를 점차 제거하고 노동 각종 노동자의 평등한 취업을 촉진시킨다. 노동력 시장과 인재시장의 통합과 개혁을 다그쳐 추진한다. 정부부서는 거시적 조정을 실시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주체가 공정 경쟁하고 중개조직의 서비스가 규율된 시장운행 구조를 구축, 건전히 하며 규율된 관리제도와 탄력적인 시장운행 기제의 형성을 추진한다. 인력자원시장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자원 시장정보 발표제도를 완벽히 한다. 인력자원시장 모니터링체계를 완벽히 하여 인력자원시장의 법제화 건설을 다그쳐 추진한다.  ②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를 보강한다.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기구의 공공관리와 서비스 기능을 조정하여 도농을 아우르는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체계를 형성한다.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의 제도화, 전문화 및 정보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한다. 도농의 균등한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제도를 건전히 하고 노동자에 대한 무료 취업서비스, 취업 곤란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특정 그룹에 대한 전문 취업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 취업서비스 내용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서비스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에게 효율적이고 양질의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층 취업과 사회보장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취업정보 모니터링과 구인구직 정보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사회에 공공취업 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 수급예측을 전개하여 교육과 양성을 효율적으로 인도하고 노동력 수급구조를 개선한다.  ③ 인력자원서비스업을 힘써 발전시킨다. 전문화, 정보화, 산업화된 인력자원서비스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여 기본 공공서비스가 충분히 보장되고 시장화 서비스산업이 점차 강대해 지고 사회취업과 안력자원 개발에 봉사하는 배치능력을 현저하게 제고시킨다. 산업 유도, 정책 지원, 환경 조성을 중점으로 하며 인사대리, 인재추천, 인력교육, 노무파견 등의 인력자원서비스를 규율하고 발전시킨다. 브랜드 추진전략을 실시하여 인력자원서비스 브랜드를 육성하며, 브랜드 홍보를 보강하여 인력자원서비스 산업단지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집결효과를 형성한다. 인력자원 서비스체인을 완벽히 하며 다차원, 다각적인 인력자원서비스기구 그룹을 구축하여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 인력자원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인력자원서비스 혁신을 장려하며 서비스 제공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  | | --- | | 표 5: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행동계획 | | 01 공공취업과 인재서비스 전문행동. "취업 지원 월", "봄바람 행동", "민영기업 구인 주", "대학교 졸업생 취업서비스 월", "대학교 졸업생 취업서비스 주" 등의 전국성 공공취업 및 인재서비스 전문 활동을 전개하여 중점적으로 취업 곤란인원, 농업 유휴노동력, 대학교 졸업생 등의 취업을 도와준다.  02 취업과 실업 실태의 모니터링 및 경보공정. 국가 전자행정네트워크에 의존하여 전국을 아우르는 취업, 실업 정보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 건전히 하며 취업정보통계와 실업지표 경보체계를 완벽히 한다. 취업 수급 예측을 실시하여 시의 적절하게 취업 수요와 실업 경보정보를 발표한다. |   (6) 실업 예방과 조정을 보강한다.  ① 실업통계 제도와 실업경보 기제를 구축한다. 취업과 실업등록 관리방법을 완벽히 하고 도시 실업률 조사 통계를 완벽히 한다. 실업 실태 모니터링 제도를 완벽히 하여 기업의 일자리 변화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모니터링 한다. 실업 경보기제를 탐색하고 보강하며, 목표성이 강한 정책조치에 지원을 제공한다.  ② 실업예방과 조정기제를 구축, 건전히 하고 실업보험 제도를 완벽히 한다. 구조조정과 중대재해,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출현하는 실업리스크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예방과 효율적인 조정을 실시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정하며,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실업을 사회의 수용범위에로 통제시킨다. 기업이 취업을 안정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권장하며 기업의 규모화 감원행위를 규율한다. 실업인원을 조직하여 상응하는 취업교육, 지도, 서비스, 지원 등 취업 준비활동에 참가시켜 실업인원의 실업주기를 줄이고 실업리스크를 분산시킨다. 사회보장체계를 완벽히 하여 취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킨다.  (7) 노동관계 조율기제와 기업의 임금분배 제도를 건전히 한다.  ① 노동표준 체계와 노동관계 조율기제를 건전히 한다. 시의 적절하게 근로시간, 휴식휴가, 여직원과 미성년자의 특수보호 등 표준을 개정, 완벽히 하며 노동정액기준 관리를 확실하게 추진한다. 노동계약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소기업과 농민공의 노동계약 체결비율을 높인다. 노무파견에 대한 규범화 관리를 보강한다. 노동자 고용 등록제도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전국에서 통일적인 노동력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집단협상과 집단계약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집단계약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시키고 집단협상의 실제 효율을 제고시킨다. 노동관계 조율 3자 기제 건설을 강화하고 혁신하며,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에서의 3자 기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킨다. 3자 기제에 의한 집단분쟁 협상 처리방법을 완벽히 한다.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활동을 심도 있게 전개한다.  ② 임금 소득분배 제도 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최저임금 제도를 완벽히 하고 관철하며, 최저임금기준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린다.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임금 집단협상 업무를 추진하며 기업의 임금결정 기제와 정상적인 인상 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임금가이드라인 제도를 완벽히 한다. 인력자원시장 임금가이드라인과 업계 인건비 정보 가이드제도를 완벽히 하며,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기업의 급여조사와 정보발표 제도를 구축한다. 국유기업의 임금총액 관리방법을 개혁하고 일부 업계의 임금총액과 임금수준에 대한 이중 조정을 실시하여 업계 지간의 임금수준 격차를 줄인다. 국유기업, 금융기관 고위급 관리인원에 대한 급여 관리를 엄격히 규율한다. 기업 임금지급 보장제도 건설을 강화하며 임금보증금, 임금체불 응급 준비금, 체불임금 변제에 대한 공사 총도급기업의 책임제, 노동보수 지급 거절에 대한 행정 및 사법 연동 단속기제와 정부 속지관리 책임제 등 제도를 완벽히 한다.   |  | | --- | | 표 6: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 계획 | | 01 노동기준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 노동기준 업무체제 기제를 건설 및 완벽히 하고 기존 노동기준 실시상황을 전면적으로 평가하며, 노동기준 제(개)정 업무를 전개하여 노동기준 전문인재대오와 서비스플랫폼 건설을 강화한다.  02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기업 임금조사 및 정보 발표제도를 구축한다. 부동한 직업 노동자의 급여와 기업 인건비 정보를 지체 없이 장악하고 정기적으로 발표하여 임금분배 거시적 조정 강화에 지원을 제공하며, 사회 각계에 공공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 |   (8) 노동보장 감참 및 노동인사 분쟁 조정중재를 강화한다.  ① 노동보장 감찰업무의 체제건설을 강화한다. 순찰 검사업무를 강화하여 전문검사의 효율을 높이고 신고, 고발 처리 시효성을 제고시키며 예방경보 기제를 구축한다. 노동보장 감찰 네트워크관리를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감찰 법 집행효율을 제고시킨다. 사용자의 노동보장 법 준수 보관서류를 완벽히 하고 동태적인 분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노동보장 감찰 및 형사 사법의 연동기제와 다부문의 종합 정비기제를 완벽히 하고 형사 사건 이송제도와 사건처리 협조조사 제도를 완벽히 한다. 노동보장 감찰 입법을 추진하고 중대 노동보장 불법행위 사회공표 제도를 구축한다. 성, 시, 현 및 가두와 향진을 아우르는 노동보장 감찰체계를 건전히 하고 감찰기구의 대오표준화 건설을 추진하며, 전직 감찰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감찰 협조관리 대오를 발전시킨다.  ② 노동인사 분쟁 처리효능 건설을 강화한다. "예방, 기층, 조정 중점"의 방침을 견지하고 기업을 지도하여 내부 협상 및 조정기제를 건전히 하도록 한다. 향진, 가두 노동분쟁 조정기구 건설을 추진하고 조정기제와 방법을 활용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한다. 중대 집단노동분쟁 응급 조사처리기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한다. 노사분쟁 중재체제 기제를 진일보 건전히 하고 노사분쟁 중재기구의 실체화와 조정 중재대오의 전문화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중재사건 처리 제도를 완벽히 하여 사건처리 절차를 규율하고 의법, 공정, 시의 적절하게 노사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4. 조직 실시 강화**  (1)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책임분담을 실시한다. 각급 정부는 규획 실시에 대한 조직지도를 강화하여 취업촉진업무 조율기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킴으로써 규획의 제반 목표임무가 시행되도록 보장한다. 국무원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 행정부서는 전문규획의 실시, 지도, 조율, 독촉 및 검사업무를 관장하며, 각 유관부문은 이에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여 규획 실시업무에서 합력을 형성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이 규획의 배치에 따라 실제에 결부시켜 목표임무를 분해하여 책임분공을 명확히 하고 정책체계를 완벽히 하여 제반업무를 착실하게 처리한다. 규획 중점지표 완성상황을 정부의 종합검정체계에 포함시켜 각급 지방정부의 과학발전관 관철과 민생문제 해결을 검정하는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2) 능력건설을 강화하고 업무수단을 완벽히 한다. 취업분야의 기본이론과 중대 정책의 예측성 연구를 강화하여 과학연구 혁신과 성과운용을 추진하며, 취업업무에 계통적이고 과학적인 이론지도와 정책제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공공취업 종합서비스능력을 끌어올리는 중대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취업정책 조치와 중대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취업분야의 기본시설건설과 관리서비스능력을 제고시킨다. 취업분야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여 도농 노동자들에게 취업정보, 취업자문, 취업교육 등의 공공정보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다지역 취업서비스 정보 공유, 협동기제를 구축한다. 취업업무의 규범화, 표준화 및 과학화를 추진한다.   |  | | --- | | 표 7: 공공 취업 종합서비스 중대공정 | | 01 기층 노동취업과 사회보장 종합서비스플랫폼 건설공정. 현, 향 2급 서비스 시설(장비)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취업과 직업기능 교육, 노동관계 조율, 노동보장 감찰 및 조정중재, 노무수출 등의 서비스, 그리고 농민공을 상대하는 기본공공서비스를 전개하며 사회보험가입 등기, 보험료 납부, 대우적용, 관계이전 등의 취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두(향진)서비스센터, 행정 촌(사회구역) 서비스창구와 기타 공공서비스시설의 건설을 공동 추진하고 공유한다.  02 성, 지방(시)급 인력자원시장 건설공정. 일부 성, 지방(시)급 인력자원 종합서비스시설을 신축 및 개축하며, 취업과 인력자원서비스, 노동관계조율, 노동인사 분쟁중재, 노동보장감찰 조건을 개선하여 농민공을 포함하는 각종 그룹에 대한 기본 공공서비스를 강화한다. |   (3) 모니터링 평가를 강화하고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규획 실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실적 검정기제를 구축하고 모니터링 평가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규획 실시상황에 대한 추적분석을 강화한다. 각 지역의 규획 실시상황에 밀접히 유의하고 규획 실시에 대한 거시적 지도를 강화하여 연도계획, 지방규획과 이 규획의 목표와 임무지간의 연결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광범위한 선전을 전개하여 노동자들이 취업관념을 전환하여 자체의 노력으로 취업하도록 인도하며, 사회 각계를 동원하여 취업업무에 관심을 돌리고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양호한 언론환경을 조성한다. |  | **国务院关于批转促进就业规划 （2011-2015年）的通知** 国发〔2012〕6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国务院各部委、各直属机构： 　　国务院同意人力资源社会保障部、发展改革委、教育部、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农业部、商务部制定的《促进就业规划（2011-2015年）》，现转发给你们，请认真贯彻执行。  国务院  二○一二年一月二十四日  **促进就业规划（2011-2015年）** 人力资源社会保障部、发展改革委、教育部、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  农业部、商务部  为了做好“十二五”时期就业工作，促进经济发展与扩大就业相协调，促进社会和谐稳定，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和《中华人民共和国就业促进法》制定本规划。 　　**一、背景** 　　（一）“十一五”时期就业工作的主要成效。 　　“十一五”时期是我国发展史上极不平凡的五年，也是就业工作积极应对挑战并取得显著成效的五年。在党中央、国务院的领导下，全面实施扩大就业发展战略和更加积极的就业政策，有效应对地震灾害和国际金融危机，就业规模不断扩大，就业结构不断改善，劳动者就业能力不断提高。市场机制在人力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得到有效发挥，妥善解决了体制转轨过程中遗留的下岗失业人员再就业问题，并在推进城乡统筹、引导农业富余劳动力有序转移就业、促进高校毕业生基层就业和自主  创业等方面迈出新步伐。覆盖城乡的公共就业和人才服务体系基本形成，面向全体劳动者的职业培训制度和对困难群体的就业援助制度不断完善。就业促进法、劳动合同法、劳动争议调解仲裁法相继颁布实施，促进就业的法律体系和劳动关系协调机制逐步健全，企业工资分配制度改革稳步推进。   |  |  |  |  | | --- | --- | --- | --- | | **专栏1　“十一五”时期就业工作进展情况** | | | | | 指标/项目 | 2005年 | “十一五”规划目标 | 2010年实现情况 | | 五年城镇新增就业（万人） | 〔4200〕 | 〔4500〕 | 〔5771〕 | | 城镇登记失业率（%） | 4.2 | 5 | 4.1 | | 五年转移农业劳动力（万人） | 〔4000〕 | 〔4500〕 | 〔4500〕 | | 全国城乡就业人员（亿人） | 7.46 | / | 7.61 | | 一、二、三产业从业人员比重 | 44.8∶23.8∶31.4 | / | 36.7∶28.7∶34.6 | | 全国农民工总量（亿人） | / | / | 2.42 | | 专业技术人才总量（万人） | 4196 | / | 4686① | | 注:〔〕表示五年累计数；①为2008年末数据。 | | | |     （二）“十二五”时期面临的就业形势。 　　“十二五”时期，我国就业形势将更加复杂，就业总量压力将继续加大，劳动者技能与岗位需求不相适应、劳动力供给与企业用工需求不相匹配的结构性矛盾将更加突出，就业任务更加繁重。一是劳动力供大于求的总量压力持续加大，城镇需就业的劳动力年均2500万人，还有相当数量的农业富余劳动力需要转移就业。二是就业的结构性矛盾更加突出，随着技术进步加快和产业优化升级，技能人才短缺问题将更加凸显；部分地区、企业用工需求与劳动力供给存在结构性失衡，造成企业“招工难”与劳动者“就业难”并存；以高校毕业生为重点的青年就业、农业富余劳动力转移就业、失业人员再就业，以及就业困难群体实现就业难度依然很大。三是经济社会环境变化对促进就业提出了新的挑战。转变经济发展方式，推进产业升级、科技进步和管理创新对提高劳动者素质提出了更高的要求，推进城镇化对农业富余劳动力转移就业工作提出了新的任务。同时，公共就业和人才服务以及职业培训不能满足需要，人力资源市场信息化建设滞后，影响劳动力流动就业的体制机制障碍依然存在；经济社会转型过程中劳动关系矛盾凸显，劳动者利益诉求发生新的变化，劳动关系调整体制机制不完善的问题仍然比较突出，劳动关系协调难度加大。我们必须深刻认识就业工作面临的复杂形势，进一步明确任务和方向，全力以赴做好就业工作。 　　**二、指导思想、基本原则和发展目标** 　　（一）指导思想。 　　高举中国特色社会主义伟大旗帜，以邓小平理论和“三个代表”重要思想为指导，深入贯彻落实科学发展观，适应加快转变经济发展方式的要求，紧密结合保障和改善民生、构建和谐社会的需要，切实把就业作为民生之本，作为经济社会发展的优先目标，以充分开发和合理利用人力资源为出发点，健全劳动者自主择业、市场调节就业、政府促进就业相结合的机制，实施更加积极的就业政策，创造平等就业机会，构建和谐劳动关系，提高就业质量，努力实现充分就业。 　　（二）基本原则。 　　1.坚持促进就业与经济社会发展相结合。将促进就业放在经济社会发展的优先位置，作为保障和改善民生的头等大事，依靠经济发展带动就业增长，以扩大就业来促进经济持续发展，为转变经济发展方式提供有力保证。 　　2.坚持促进就业与人力资源开发相结合。适应加快转变经济发展方式，推动发展向主要依靠科技进步、劳动者素质提高、管理创新转变的要求，强化人力资源开发，大力加强职业培训和创业培训，通过全面提升劳动者职业素质和就业能力扩大就业，提高就业质量。 　　3.坚持发挥市场机制作用与政府促进相结合。充分发挥市场机制在人力资源配置中的基础性作用，消除制度性、体制性障碍，进一步强化政府在促进就业中的责任，将促进就业作为制定、实施和调整经济社会政策的基本目标，广泛动员社会各方面力量，特别是注意充分发挥工会、共青团、妇联、残联等社会团体作用，调动企业履行社会责任、扩大和稳定就业的积极性，共同做好就业工作。 　　4.坚持促进企业发展与维护劳动者权益相结合。重视劳动者利益诉求，探索形成企业与职工利益共享机制，统筹处理好维护劳动者就业权利与维护劳动者劳动报酬、休息休假等权利的关系，通过构建和发展和谐稳定的劳动关系，促进实现扩大就业规模与提升就业质量的统一。 　　（三）发展目标。 　　1.就业规模持续扩大，就业结构更加合理。城镇新增就业4500万人。转移农业劳动力4000万人。城镇就业比重逐步提高，三次产业就业结构更加优化。 　　2.有效控制失业，保持就业局势稳定。城镇登记失业率控制在5%以内。将失业人员组织到就业准备活动中，使平均失业周期进一步缩短。实现对就业困难人员和零就业家庭人员就业援助的长效化。 　　3.人力资源开发水平得到明显提高。劳动者得到有效培训机会，全国技能劳动者总量达到1.25亿人，其中高技能人才总量达到3400万人，占技能劳动者的比重达到27%。专业技术人才总量达到6800万人。 　　4.就业质量得到进一步提升。企业劳动合同签订率达到90%，企业集体合同签订率达到80%。形成正常的工资增长机制，职工工资收入水平合理较快增长，最低工资标准年均增长13%以上，绝大多数地区最低工资标准达到当地城镇从业人员平均工资的40%以上。劳动条件得到较大改善。社会保障制度覆盖所有劳动者，就业稳定性明显提高。   |  |  |  | | --- | --- | --- | | **专栏2　“十二五”时期就业主要指标** | | | | 指　　标 | 2010年 | 2015年 | | 城镇新增就业人数（万人） | 〔5771〕 | 〔4500〕 | | 城镇登记失业率（%） | 4.1 | ＜5 | | 转移农业劳动力（万人） | 〔4500〕 | 〔4000〕 | | 高技能人才总量（万人） | 2863 | 3400 | | 专业技术人才总量（万人） | 4686① | 6800 | | 企业劳动合同签订率（%） | 65 | 90 | | 企业集体合同签订率（%） | 50 | 80 | | 最低工资标准年均增长率（%） | 12.5 | ＞13 | | 劳动人事争议仲裁结案率（%） | 80 | 90 | | 注：“十二五”时期主要指标为预期性指标；〔〕表示五年累计数；①为2008年末数据。 | | |   5.统一规范灵活的人力资源市场基本形成。人力资源市场管理制度逐步统一。覆盖城乡的公共就业和人才服务体系进一步健全，全部街道、乡镇和城市95%以上的社区设立基层劳动就业服务平台。加快公共就业和人才服务信息网络建设，实现全国互联互通。 　　6.劳动者权益保障机制更加完善。基层劳动关系协调工作体系进一步加强。全国乡镇（街道）基本实现劳动保障监察“网格化、网络化”管理。企业、街道、乡镇基层调解组织和劳动人事争议仲裁机构实体化建设基本完成，仲裁结案率达到90%。 　　**三、主要任务和政策措施** 　　（一）提高经济发展对就业的拉动能力。 　　1.落实就业优先战略。各级政府在制订国民经济计划、对产业结构和产业布局进行重大调整时，把就业作为社会经济发展的优先目标予以考虑，建立健全经济发展、产业结构调整与扩大就业良性互动的长效机制。根据实现更加充分就业目标的要求合理确定经济发展速度，在制定财政、金融、产业等宏观经济政策时，要评估对就业的影响，注意防范失业风险。不断加大对就业的资金支持，形成公共财政保障、社会各方多元投入的机制。发挥政府投资和重大建设项目对就业的拉动作用，研究建立公共投资促进就业的考核评估机制。 　　2.着力发展吸纳就业能力强的产业和企业。在培育战略性新兴产业中，不断开发就业新领域，增加智力密集型就业机会。在经济转型和结构调整中，加快实施有利于发挥劳动力比较优势的技术进步和产业升级战略。大力发展第三产业，广开服务业就业渠道，注重发展金融、物流等生产性服务业及餐饮等生活性服务业，加快高技术服务业和服务贸易发展，加大政策支持力度，着力提高服务业就业比重；稳步实现产业升级，发展资本密集、高技术制造业时，兼顾发展劳动密集型企业，特别是高附加值的劳动密集型企业，大力发展中小企业，重点扶持小型微型企业，使第二产业就业份额保持稳中有升；注重发展现代农业、精细农业，挖掘第一产业就业潜力，推进农业产业化经营，不断增加农村就业机会。 　　3.促进以创业带动就业。完善并落实鼓励劳动者创业的税收优惠、小额担保贷款、财政贴息、资金补贴、场地安排等扶持政策，简化审批手续，严格规范收费行为，改善创业环境。健全创业培训体系，鼓励高等学校和中等职业学校开设创业培训课程。健全创业服务体系，为创业者提供项目信息、政策咨询、开业指导、融资服务、人力资源服务、跟踪扶持，鼓励有条件的地方建设一批示范性的创业孵化基地。推进创业型城市建设。加强宣传和舆论引导，弘扬创业精神，树立一批创业典型，营造崇尚创业、褒奖成功、宽容失败的良好创业氛围。 　　4.发展家庭服务业促进就业。重点发展家政服务、养老服务、社区照料服务、病患陪护服务、残疾人居家托养服务等家庭服务业态，因地制宜发展其他家庭服务业态，满足家庭的基本需求。从财税、金融、土地、价格等方面加大政策扶持力度，在企业开办、融资、品牌建设等方面支持家庭服务企业发展。推进家庭服务业公益性信息服务平台建设，加强从业人员专项技能培训。广泛开展家庭服务业千户百强创建活动，树立一批知名家庭服务品牌。加快制定相应的劳动用工政策及劳动标准，规范对从事家庭服务人员的管理，维护家庭服务从业人员的合法权益。 　　（二）实施更加积极的就业政策。 　　1.实行更加有利于促进就业的财政保障政策。公共财政向符合国家产业政策导向的小型微型企业和劳动密集型产业倾斜，财政支出逐步向民生倾斜，加大对困难群体的扶持力度。各级政府要加大就业资金投入，进一步完善资金使用管理办法，加强就业资金支出绩效评估，提高资金使用效益和管理水平。中央财政继续加大就业专项资金转移支付力度。 　　2.实行支持和促进就业的税收优惠政策。建立健全有利于加快产业结构调整，促进服务业和小型微型企业发展的税收政策体系，减轻企业税收负担，充分发挥其在吸纳城乡劳动力就业中的作用；完善和落实促进高校毕业生、农民工、就业困难人员等重点群体就业的税收政策，鼓励企业吸纳重点群体就业。 　　3.实行更加有利于促进就业的金融支持政策。积极发挥货币政策的宏观调控作用，支持经济发展方式转变和经济结构战略性调整，为实体经济发展和就业创造良好的宏观金融环境。加强宏观信贷政策指导，鼓励和引导金融机构支持符合国家产业政策导向的劳动密集型产业、服务业、小型微型企业发展和自主创业，落实促进小型微型企业贷款的财税支持政策。进一步完善小额担保贷款政策，建立政策监测评估机制，切实提高政策落实效果。 　　4.实行更加有利于促进就业的对外贸易政策。将对国内就业的影响作为制定进出口政策，以及处理贸易争端的重要依据。积极支持有利于增加就业的行业和企业，对受贸易摩擦影响较大的行业或企业，适时采取有效措施减少失业。鼓励开展对外劳务合作。 　　5.实施鼓励劳动者多渠道、多形式就业的扶持政策。通过优惠政策和就业服务扶持劳动者自谋职业、自主就业。鼓励和支持劳动者在小型微型企业就业、临时性就业以及其他形式的灵活就业，完善与此相适应的劳动关系、工资支付制度，完善就业与社会保障的联动机制，为劳动者灵活就业、流动就业或转换工作岗位提供支持，增强就业的稳定性。 　　（三）统筹做好城乡、重点群体就业工作。 　　1.推进城乡和区域就业统筹协调发展。坚持城乡统筹，建立健全城乡劳动者平等就业的制度，消除劳动者就业的城乡差别和就业歧视，创造公平就业环境。加强分类指导，推动东部地区加快产业升级和经济结构调整，提高就业质量；指导中西部地区结合产业的梯次转移，引导更多的劳动力就地就近转移就业。重视解决少数民族地区和贫困地区的就业问题，给予政策倾斜，支持其发展经济扩大就业。 　　2.切实做好高校毕业生和其他青年群体的就业工作。继续把高校毕业生就业放在就业工作的首位，积极拓展高校毕业生就业领域，鼓励中小企业吸纳高校毕业生就业。鼓励引导高校毕业生面向城乡基层、中西部地区，以及民族地区、贫困地区和艰苦边远地区就业，落实各项扶持政策。鼓励高校毕业生自主创业。支持高校毕业生参加就业见习和职业培训，鼓励科研项目单位吸纳高校毕业生就业。继续做好免费师范生的就业工作。积极做好征集高校毕业生入伍服义务兵役工作。大力加强就业指导、就业服务，更加关注女高校毕业生就业问题，加大对就业困难高校毕业生和其他长期失业青年的援助力度。大力发展适合青年和各类毕业生求职就业的互联网就业服务，完善以实名制为基础的高校毕业生就业统计制度。进一步改革高等教育人才培养模式，使之更加适应经济社会发展需要，提高人才培养质量。继续做好退役军人就业工作。   |  | | --- | | **专栏3　高校毕业生就业推进计划** | | 01　岗位拓展计划。拓宽就业渠道，引导高校毕业生到中小企业、非公有制企业和城乡基层就业。 02　就业服务与援助计划。加强对高校毕业生的就业服务与就业指导，做好高校毕业生就业见习、职业培训和困难高校毕业生就业援助。 03　创业引领计划。加强对高校毕业生的创业教育和培训，强化创业服务，完善创业扶持政策，促进帮扶高校毕业生自主创业。 04　基层就业项目。统筹实施“选聘高校毕业生到村任职”、“三支一扶（支教、支农、支医和扶 　　贫）”、“大学生志愿服务西部计划”、“农村义务教育阶段学校教师特设岗位计划”等基层就业项目。 |   3.推进农业富余劳动力转移就业。适应城镇化加速发展的趋势，加快建设小城镇，发展县域经济，发展乡镇企业和非农产业，为农业富余劳动力开辟更多的生产和就业门路，实现就地就近就业。完善并落实创业政策措施，积极支持农民工返乡创业。消除流动就业的制度壁垒，创造有利的政策环境，进一步完善职业培训、就业服务、劳动维权“三位一体”的工作机制，推进农业富余劳动力进城务工和稳定转移。坚持因地制宜、分步推进，积极稳妥地把有稳定劳动关系并在城镇居住一定年限的农民工及其家属逐步转为城镇居民。 　　4.做好淘汰落后产能企业职工安置工作。将淘汰落后产能企业职工安置工作纳入本地区节能减排、淘汰落后产能工作的整体规划，统筹考虑企业退出与保障职工权益，健全淘汰落后产能企业职工安置工作协调机制，采取积极措施，多途径、多渠道安置职工。完善扶持和资金投入政策，妥善处理职工劳动关系，积极稳妥地做好职工社会保险关系接续和转移，扶持企业开展职工转岗转业培训，稳定就业，减少失业。 　　5.加强对困难群体的就业援助。建立健全就业援助制度，完善就业援助政策，开发公益性岗位，形成长效工作机制。全面推进充分就业社区建设，为部分地区率先实现充分就业奠定基础。全面贯彻落实《残疾人就业条例》，完善残疾人就业促进和保护政策措施，推动党政机关、企事业单位按比例安排残疾人就业，加大对福利企业、盲人按摩机构等残疾人集中用人单位的管理和扶持力度，帮扶残疾人自主创业和灵活就业，推动残疾人在社区服务业、城市便民服务网点就业。建立与残联组织联合开展就业援助的工作机制，各级政府开发的公益性岗位优先安排残疾人。继续做好妇女就业工作。 　　（四）大力开发人力资源。 　　1.加强专业技术人才队伍建设。进一步实施并完善新世纪百千万人才工程，完善政府特殊津贴制度，改革完善博士后制度。实施更加开放的人才政策，大力吸引海外留学人才回国工作、创业或以多种形式为国服务。积极实施海外高层次人才引进计划、留学人员回国创业启动支持计划和海外赤子为国服务行动计划，继续加强留学人员创业园建设。实施万名专家下基层服务行动计划。统筹专业技术人员职称制度和职业资格制度改革，完善专业技术人才评价机制，规范专业技术人才职业准入，完善专业技术人才职业水平评价办法和专业技术职务评价办法。深入实施专业技术人才知识更新工程，健全面向全体专业技术人员的继续教育制度。 　　2.健全面向城乡全体劳动者的职业培训制度。紧密结合市场需求和就业要求，强化职业培训。统筹推动就业技能培训、岗位技能提升培训和创业培训，积极探索现代学徒制培训，加快构建劳动者终身职业培训体系，使城乡劳动者都能得到有针对性的培训，提升职业技能水平。加强培训管理，整合培训资源，健全社会化职业培训网络。依托一批具有较高培训质量、与就业紧密结合，并能在当地发挥示范带动作用的职业培训机构，建设职业技能实训基地。加强残疾人职业教育培训。落实培训补贴政策。 　　3.加快培养产业发展急需的技能人才。进一步健全以企业为主体、职业院校为基础，学校教育与企业培养紧密联系、政府推动与社会支持相互结合的高技能人才培养培训体系。落实国家高技能人才振兴计划，依托大型骨干企业、重点职业院校和培训机构，以及高技能领军人才，加快重点行业（领域）急需紧缺职业（工种）高技能人才培养。完善职业资格证书制度，加快建立以职业能力为导向、以工作业绩为重点，注重职业道德和职业知识水平的技能人才评价体系，探索技能人才多元评价机制，畅通技能人才成长通道。   |  | | --- | | **专栏4　人力资源开发重大工程** | | 01　专业技术人才知识更新工程。依托高等学校、科研院所和大型企业现有施教机构，建设一批国家级继教育基地，开展大规模的知识更新继续教育，提高专业技术人才的水平和能力。 02　国家高技能人才振兴计划。 　　（1）高级技师培训。充分发挥行业、企业和职业院校作用，加快培养一批具有较深专业理论知识和精湛技艺技能的技师和高级技师。 　　（2）技能大师工作室建设。基本形成覆盖中心地区和重点行业的技能传递与扩散网络，建立较为完善的技能人才绝技绝活价值实现及代际传承机制。 03　加强就业、创业、技能实训工作。在产业集中度高的区域性中心城市以及地（市）级以上城市，建立一批实训基地，面向社会各类人员提供公益性、示范性技能训练和鉴定服务，更加注重实际操作能力和技能素质训练，特别是急需紧缺职业的高技能人才培养，并开展专业化创业培训。 |   （五）加强人力资源市场建设。 　　1.加快形成统一规范灵活的人力资源市场。加快人力资源配置领域的改革进程，逐步消除人力资源市场城乡分割、地区分割和身份分割，促进城乡各类劳动者平等就业。加快推进劳动力市场与人才市场的统一和改革进程，建立健全政府部门加强宏观调控和提供公共服务、市场主体公平竞争、中介组织规范服务的市场运行格局，推动形成规范的管理制度和灵活的市场运行机制。建立人力资源市场监测体系，完善人力资源市场信息发布制度。完善人力资源市场监管体系，加快人力资源市场法制化建设。 　　2.加强公共就业和人才服务。整合公共就业和人才服务机构公共管理和服务的职能，形成覆盖城乡的公共就业和人才服务体系。全面推进公共就业和人才服务的制度化、专业化和信息化建设。健全城乡均等的公共就业和人才服务制度，全面落实对劳动者的免费就业服务、对就业困难人员的就业援助和对特定群体的专项就业服务。不断丰富就业服务内容，拓展服务功能，为劳动者提供优质高效的就业服务。加强基层就业和社会保障服务体系建设，建立覆盖全国的就业信息监测和招聘信息公共服务平台，为社会提供公共就业信息服务。开展就业需求预测，有效引导教育和培训，改善劳动力供给结构。 　　3.大力发展人力资源服务业。加快建立专业化、信息化、产业化的人力资源服务体系，逐步实现基本公共服务充分保障，市场化服务产业逐步壮大，服务社会就业与人力资源开发配置能力明显提升。以产业引导、政策扶持和环境营造为重点，规范发展人事代理、人才推荐、人员培训、劳务派遣等人力资源服务。实施品牌推进战略，打造一批人力资源服务品牌，加大品牌宣传力度，推动人力资源服务产业园区发展，形成集聚效应，完善人力资源服务链，构建多层次、多元化的人力资源服务机构集群，扩大服务供给。培育人力资源服务需求，鼓励人力资源服务创新，提升服务供给能力和水平。   |  | | --- | | **专栏5　公共就业和人才服务行动计划** | | 01　公共就业和人才服务专项行动。开展“就业援助月”、“春风行动”、“民营企业招聘周”、“高校毕业生就业服务月”和“高校毕业生就业服务周”等全国性公共就业和人才服务专项活动，重点帮助就业困难人员、农业富余劳动力、高校毕业生等群体就业。 02　就业失业动态监测和预警工程。依托国家电子政务网络，建立健全覆盖全国的就业失业信息监测网络，完善就业信息统计和失业预警指标体系，开展就业需求预测，适时发布就业需求和失业预警信 息。 |   （六）加强失业预防和调控。 　　1.建立失业统计制度和失业预警机制。完善就业与失业登记管理办法，完善城镇调查失业率统计。完善失业动态监测制度，及时准确监测企业岗位变化情况。探索实行失业预警制度，加强预警预测，为采取有针对性的政策措施提供支持。 　　2.建立健全失业预防和调控机制。完善失业保险制度。对结构调整和重大灾害及遇到危机情况下出现的失业风险进行积极预防和有效调控，制定应对预案，采取切实措施，保持就业稳定并将失业控制在社会可承受范围。鼓励企业履行稳定就业的社会责任，规范企业规模裁员行为。将失业人员组织到相应的就业培训、指导、服务、援助等就业准备活动中，缩短失业人员失业周期，分散失业风险。完善社会保障体系，提高就业的稳定性。 　　（七）健全劳动关系协调机制和企业工资分配制度。 　　1.健全劳动标准体系和劳动关系协调机制。适时修订完善工作时间、休息休假、女职工和未成年工特殊保护等标准，大力推进劳动定额标准管理。全面实行劳动合同制度，提高小企业和农民工劳动合同签订率。加强对劳务派遣用工的规范管理。全面推进劳动用工备案制度建设，建立全国统一的劳动用工信息数据库。积极推进集体协商和集体合同制度建设，扩大集体合同制度覆盖面，提高集体协商实效性。加强和创新协调劳动关系三方机制建设，充分发挥三方机制在构建和谐劳动关系中的重要作用。完善依托三方机制协调处理集体协商争议的办法。深入开展和谐劳动关系创建活动。 　　2.深入推进工资收入分配制度改革。完善并落实最低工资制度，逐步提高最低工资标准。积极稳妥推进工资集体协商工作，建立健全企业工资决定机制和正常增长机制。完善工资指导线制度。完善人力资源市场工资指导价位和行业人工成本信息指导制度，建立统一规范的企业薪酬调查和信息发布制度。改革国有企业工资总额管理办法，对部分行业工资总额和工资水平实行双重调控，缩小行业间工资水平差距。严格规范国有企业、金融机构高管人员薪酬管理。加强企业工资支付保障制度建设，完善工资保证金、欠薪应急周转金，以及清偿欠薪的工程总承包企业负责制、对拒不支付劳动报酬的行政司法联动打击机制和政府属地管理负责制等制度。   |  | | --- | | **专栏6　构建和谐劳动关系计划** | | 01　加强劳动标准体系建设。建立健全劳动标准工作体制机制，全面评估现有劳动标准实施状况，开展劳动标准制（修）订工作，加强劳动标准专业人才队伍和服务平台建设。 02　建立统一规范的企业薪酬调查和信息发布制度。及时掌握并定期发布不同职位劳动者的薪酬和企业人工成本信息，为加强工资分配宏观调控提供支持，为社会各方面提供公共信息服务。 |   （八）加强劳动保障监察和劳动人事争议调解仲裁。 　　1.加强劳动保障监察工作体制建设。加强巡视检查工作，增强专项检查针对性，提高投诉举报处理时效性，建立预防预警机制。全面推进劳动保障监察网格化管理，提高监察执法效能。完善用人单位劳动保障守法诚信档案，实施动态分类监管。完善劳动保障监察与刑事司法联动机制和多部门综合治理机制，完善刑事案件移送制度和案件办理协查制度。推进劳动保障监察立法，建立重大劳动保障违法行为社会公布制度。健全覆盖省、市、县和街道、乡镇的劳动保障监察体系，推进监察机构队伍标准化建设，加强专职监察员培训，发展监察协管员队伍。 　　2.加强劳动人事争议处理效能建设。坚持“预防为主、基层为主、调解为主”的方针，指导企业建立健全内部协商调解机制，推进乡镇、街道劳动争议调解组织建设，运用调解机制和方法化解劳动纠纷。建立健全重大集体劳动争议应急调处机制。进一步健全劳动人事争议仲裁体制机制，加快推进劳动人事争议仲裁机构实体化和调解仲裁队伍专业化建设，完善仲裁办案制度，规范办案程序，依法、公正、及时解决劳动人事争议，保护当事人的合法权益。 　　**四、强化组织实施** 　　（一）加强组织领导，落实责任分工。各级政府要加强对规划实施的组织领导，充分发挥促进就业工作协调机制的作用，确保规划各项目标任务得到落实。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行政部门牵头负责专项规划的实施、指导、协调、督促和检查工作，各有关部门加强协作配合，形成规划实施工作合力。地方各级政府要按照本规划的部署，结合实际分解目标任务，明确责任分工，完善政策体系，扎实做好各项工作。要把规划重点指标的完成情况纳入政府综合考核体系，作为考核地方各级政府实践科学发展观和解决民生问题的重要依据。 　　（二）加强能力建设，完善工作手段。加强就业领域基础理论和重大政策前瞻性研究，推动科研创新及成果运用，为就业工作提供系统科学的理论指导和决策支持。实施提升公共就业综合服务能力的重大项目，将就业政策措施和重大项目有机结合，提升就业领域基础设施建设和管理服务能力。加强就业领域信息化建设，积极为城乡劳动者提供就业信息、就业咨询、就业培训等公共信息服务，建立跨地区的就业服务信息共享、协同机制。推动就业工作的规范化、标准化和科学化。   |  | | --- | | **专栏7　公共就业综合服务重大工程** | | 01　基层劳动就业和社会保障综合服务平台建设工程。全面加强县、乡两级服务设施（设备）建设，开展就业和职业技能培训、劳动关系协调、劳动保障监察和调解仲裁、劳务输出等服务以及面向农民工的基本公共服务，提供社会保险参保登记、缴费、待遇核发、关系转移等经办服务。街道（乡镇）服务站、行政村（社区）服务窗口与其他公共服务设施共建共享。 02　省、地（市）级人力资源市场建设工程。新建和改扩建一批省、地（市）级人力资源综合服务设施，改善就业和人力资源服务、劳动关系协调、劳动人事争议仲裁、劳动保障监察的条件，强化包括农民工在内的各类群体的基本公共服务。 |   　　（三）加强监测评估，营造良好氛围。建立规划实施情况监测、评估和绩效考核机制，加强监测评估能力建设，强化对规划实施情况的跟踪分析。密切关注各地规划实施进展，加强规划实施的宏观指导，做好年度计划、地方规划与本规划目标任务的衔接。开展广泛宣传，引导劳动者转变就业观念，通过自身努力实现就业，动员社会各方关心、支持就业工作，营造良好舆论环境。 |